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09- 277호, 2009. 8. 3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안 제18조제1호내지제3호, 별표4)

- (1) 필름류 포장재 중 생활계에서 EPR대상과 혼합 배출되는 양이 많은 일회용 봉투, 의복류·위생용 종이제품·가정용 고무장갑·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폐기물부담금대상에서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함.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8조제2호)

- (1) 현행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2009. 1. 1시행)으로 인해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808호, 2009. 9. 2 -

국토해양부는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정비계획”(‘08. 5. 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남아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이용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

- (1) 먹는 샘물 부담금은 인하된 반면 해양심층수 관련 부칙 특례조항이 만료되어 먹는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사용료 톤당 20원(부칙 제2조),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수입업자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적용(부칙 제3조제1항), 상업용 심층수구입자 톤당 평균가격 2천원(부칙 제3조제2항)

- (2) 사용료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금 요율은 1천분의 10, 상업용 심층수구입자는 1천분의 53으로 규정함.(안 제27조, 제32조)
-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먹는 샘물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개척 단계에 있는 심층수 업계의 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1)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남아있어 법률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해양심층수위원회 관련 규정 및 면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동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 (3)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